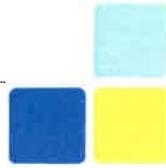


참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 학부모 연수 자료

1. 학부모 청렴 예방 교육
2. 교권보호 안내
3.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4.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5. 흡연 예방 교육
6. 정보통신윤리(스마트폰 · 인터넷 중독) 교육
7. 정보통신윤리(개인정보보호) 교육
8. 학교회계 세입 · 세출 예산

2022. 3. 25.(금)



삼례동초등학교

## 1. 학부모 청렴 예방 교육

### 촌지,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따뜻한 봄날과 함께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 학기초 상담주간이나 현장체험학습, 명절 등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와 막연한 기대 심리로 촌지(선물)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뿐만 아니라 식사제공도 해서는 안 되며,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명예, 교사들의 사기진작,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정보공개/민원 → 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시청각자료  
<https://edu.acrc.go.kr/0202/board/av.do>

→



## 2.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2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li> <li>•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b>학급교체</b> ⑥<b>전학</b> ⑦<b>퇴학(고등학교 해당)</b>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li> <li>•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li> </ul>
관할청에 의한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li> </ul>

###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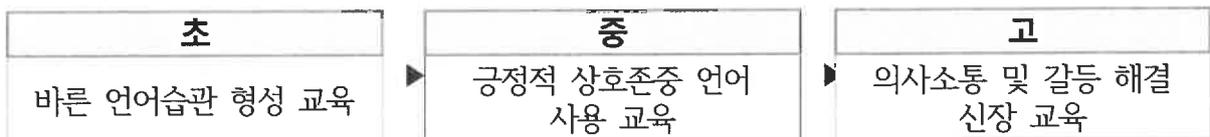
#### 가.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시기 : 친구사랑주간(학기별 2회), 다모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 내용 : 교과 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교수학습자료 개발·적용
-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 위(Wee)센터 운영(전주 덕진, 완산)
  - 사이버폭력 전문강사단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방경찰청, 도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인터넷드림마을, 상담복지센터 등
  - 정보 공유·협조,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자료 탑재 사이트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http://www.아인세.kr>), 아인세 동아리 운영(6학년)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홍보 강화

##### ■ 언어폭력 예방교육

- 학급 집단 상담을 통한 비폭력 대화 실천과 회복적 생활 교육 실시(학급당 4회기 실시)
- 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인식토록 교육
  - 욕설 금지에서 차별·편견·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 소통·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 언어폭력 관련 생활교육(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밥상머리 교육, 바른언어 사용 캠페인·행사 등
  - 언어순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추진

## 나.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 ■ 개념

#### ①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②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 용어 정리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 아동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근거

#### ①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②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④ 유의사항

- 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이다.
- ②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 기관에서의 범죄와는 다를 수 있다.
- ③ 학대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 ※ 참고사항 체벌 관련 판례

-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리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를 한 경우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였음(춘천지법 2017.1.19.)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① 아동에 대한 교육

####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 ※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 교육기준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방법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예방법과 대처법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 교육 대상: 각급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생

● 교육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상황 시 아동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역할극 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안내 등

### ① 신고의무자 교육

####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 신고 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112, 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① 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제 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아동학대 사안 보고 및 신고 절차

### ① 상담 및 신고

#### ①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의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등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적절한 양육 환경인지 의심되거나, 멍 상처가 보이지만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기관이므로 상담을 통해 바로 신고 접수 가능함

- ③ 교직원은 법령상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④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 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 ① 신고자 보호 강화

-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동법 제62조 제2항) 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❶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 ⦿ 교직원은 피해아동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비밀엄수의무를 지켜야 함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함

순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1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2	전라북도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남원시 시청로 41	063-635-1391
3	전라북도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인북로 112	063-852-1391

## 4.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발생장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숙박업소 등	야외, 대중 교통 시설 등	주택가, 이면도로	자동차 안	화장실, 주차장

#### ★ 성폭력 가해자 유형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가족 및 친척
65.8%	18.8%	15.4%

### 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 ❀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사건현장에서 증거가 불안한 것들을 확보합니다.
- 몸을 씻지 말고 속옷등을 같이 입지 마세요.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출동한 경찰관 혹은 센터에 제출합니다.
- 다친 부위는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 등의 의학적 공명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 처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받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 ❀ 부모의 유의사항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준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자녀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담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 ◆ 성매매, 정확히 무엇인가요?

⇒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 침해입니다. 성매매는 돈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고 함부로 그 여성에게 해도 된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권침해)입니다.



### ◆ 성매매는 불법! 알고 계셨어요?

⇒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 따라서 다음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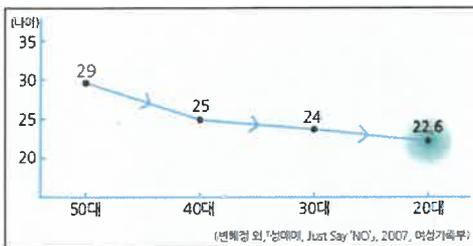
- ①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 ②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 ③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④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성매매, 왜 반대하나요?

⇒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유사한 차별과 폭력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 ◆ 남성의 최초 성 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나요?

⇒ 최초 성 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 구매 동기는 우연한 기회나 호기심에서, 절대 관행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의도적(적극적) 성 구매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 구매를 집단적으로 하는 술(놀이) 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 ◆ 성 구매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처벌받나요?

⇒ 성 구매자는 분명히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②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 ③ **청소년 대상 성 구매는 성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만 해도 처벌됩니다.**

⇒ '성 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처벌보다 더한 평생의 오점과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 ◆ 청소년 성매매를 막으려면?

⇒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가출 후 돈이 필요해서, 호기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21中」

## 5. 흡연 예방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유혹 및 압력에 이겨내도록 부모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보여주고, 그 신념이 자녀와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흡연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p>담배연기</p> <p>일산화탄소로 두뇌활동이 저하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p>	<p>같은 양을 피우더라도 체적이 작아 피해는 더 커요!</p> <p>성인에 비해 용적이 작아 피해가 더 크다.</p>	<p>어릴 때 시작하면 끊기도 힘들어!</p> <p>니코틴 중독이 더 심하다.</p>
<p>폐는 사춘기 때도 성장하기 때문에 담배는 안돼!</p> <p>청소년 흡연은 폐의 성숙에 장애를 가져온다.</p>	<p>일찍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로!</p> <p>15세 이전 흡연은 25세 이후 흡연자보다 폐암 등 사망률이 2~3배 높다.</p>	<p>어릴 때 흡연은 2세에게까지 나쁜 영향을!</p> <p>어린 그릇에 담배가 가득하니..</p> <p>청소년 흡연은 유전자변형을 일으켜 2세에게 나쁜 유전자를 전한다.</p>

# 스마트폰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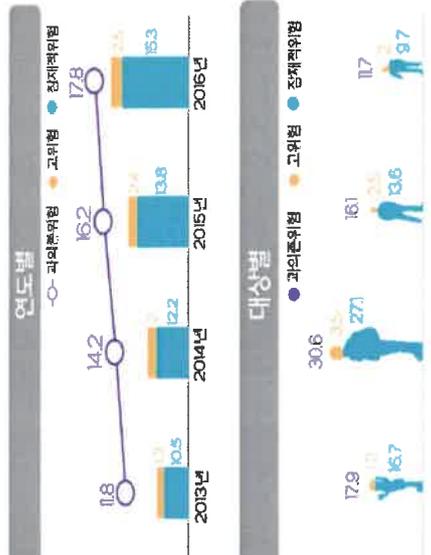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정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 ■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척도

요인	항목
조절 실패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현저성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의존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 총점 3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30점 이하 ~ 23점 이상 : 중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22점 이하 : 일반사용자군

## ■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

청소년	성인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ICT 역량 발달을 저해시킬 위험성이 높은 상태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ICT 역량 발휘를 억제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

##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1. 우뇌중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2.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 3. 학습능력 저해**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짐
  - 지극 -> 정리 -> 표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자극'만 이루어짐
- 4.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스마트폰 동영상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 언어 발달의 기회 감소
  - 가톨릭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 실험결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짐

■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가이드

😊 '만 2세' 전에 아이가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 아이 앞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 과의존 예방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나친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 교육용 앱 보다는 '책'을 읽어주세요.

- ☞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 이른 시기에 노출됐다면, '단번'에 끊어주세요.

- ☞ '일관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도록 지도해주세요.

😊 자녀와 보호자의 사용습관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 습관을 확인해보세요.

😊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세요.

- ☞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살펴봐 주세요.
- ☞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 ☞ 함께 정한 규칙은 가족 모두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주세요.
- ☞ 스마트폰을 끌 때는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 자녀와 가까이될 수 있는 대안활동을 함께해주세요.

- ☞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집니다!**

■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

😊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 (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 (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pc 사용 관리 : 그린 I-net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희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입니다.



<http://www.greeninet.or.kr> 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유희정보 차단

- ☞ 스마트폰보안관, 아이스마크피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희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입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U+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 7. 개인정보보호교육

###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개** 인 정보는 소중한데요!  
동의 없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마세요!  
※ 학원, 교습소 등 영리 사업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인** 스타그램 등 SNS, 메신저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세요  
→ SNS 2단계 인증  
2단계 인증으로 계정 보호 계층에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 및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보안을 강화하세요.  
비밀번호와 휴대전화로 전송된 고유 인증 코드를 입력하세요  
계정 도용 방지  
누구나 내 개인정보를 쉽게 훔쳐갈 수 내 계정에서 보.인할 수 없습니다

**정** 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주의 하세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주의 하세요!

**보** 호자 동의 없는 회원가입 웹사이트(게임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수

스스로 지키는 나의 개인정보! 내가 먼저 확인하고 보호 합시다!

## 8. 2022학년도 삼례동초등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세 입	1. 이전수입	212,690	179,235	33,455		
	2. 자체수입	1. 학부모부담수입	16,154	17,708	-1,554	
		2. 행정활동수입	539	560	-21	
	3. 기타	1. 전년도 이월금	5,500	10,222	-4,722	
<b>세 입 계</b>		<b>234,883</b>	<b>207,725</b>	<b>27,158</b>		
세 출	1.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000	4,560	-560	
	2.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	18,234	18,708	-474	
		2. 보건관리	13,638	12,972	666	
		3. 학생복지	1,762	6,000	-4,238	
	3. 기본적교육활동	1. 교과활동	32,655	22,049	10,606	
		2. 창의적 체험활동	22,162	14,330	7,832	
	4. 선택적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 운영	11,468	15,208	-3,740	
		2. 독서활동	10,160	7,300	2,860	
		3.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600	1,000	600	
	5. 교육활동 지원	1. 교무업무운영	5,480	4,560	920	
		2. 생활지도운영	3,000	2,000	1,000	
		3. 학습지원실 운영	9,590	9,590	0	
		3. 교육여건 개선	2,500	2,500	0	
	6. 학교 일반운영	1. 학교기관운영	40,372	44,142	-3,770	
		2. 시설 장비 유지	50,862	38,806	12,056	
		3. 학교운영 협력	1,900	1,900	0	
	7. 학교재무활동	1. 예비비	5,500	1,500	4,000	
	<b>세 출 계</b>		<b>234,883</b>	<b>207,125</b>	<b>27,758</b>	